

中小企業 共濟基金制度의 紹介 및 案内

李 揆 哲

(中小企協中央會 基金管理部貸出 2 課長)

一. 序

우리나라 經濟는 60年 以前만 해도 低投資, 低生產, 低所得으로 點綴되어 甚한 物資不足과 慢性的 Inflation下에서 이른바 貧困의 惡循環을 免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60年 以後 經濟開發計劃에 依한 工業化 推進과 함께 經濟規模의 量的 擴大 및 輸出增대로 70年代를 거쳐 80年代에 이르러 비로소 高度成長의 문턱에 進入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 過程에 있어서 政府主導下의 基幹產業 및 重化學工業 中心의 偏重支援, 稅制, 金融 또는 外資導入의 一部 戰略產業에 局限된 特惠 等으로 產業間, 部門間, 地域間의 不均衡이 深化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隔差는 國家經濟의 均衡의 發展이라는 側面에서 時急히 是正, 調整되지 않으면 않된다라는 認識이 높아지고 社會問題로까지 대두되어 政府도 中小企業이 雇傭吸收, 高附加價值의 創出 等 國民經濟에 차지하는 比重과 役割이 莫重함에 留意하여 中小企業 保護育成에 關心을 갖고 박차를 加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는 憲法(124條)에 中小企業 事業活動의 保護育成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育成을 明文化하고 1982. 4월에는 中小企業 長期振興計劃(1982~1991)을樹立, 1982. 12월에 中小

企業基金法 및 中小企業協同組合法을 改正·整備하는 等 中小企業의 保護育成과 地位向上에 強力한 意志를 보이고 그러한 具體的 意志의 一片鱗이 바로 여기서 紹介하고자 하는 中小企業 共濟事業基金이라 하겠다. 이처럼 中小企業의 保護育成을 위해 設置된 中小企業 共濟基金制度는 아직 施行初期段階에 있고 많은 補完點과 改善点이 指摘되고 있으나 同制度를 利用하는 業體數가 날로 增加하고 同制度에 關한 認識도 漸次 높아지고 있는 趨勢이다.

以下 共濟基金制度의 보다 多은 利用 擴大를 위해 筆者가 實務者의 한 사람으로 共濟基金制度에 關하여 紹介·案내하고자 한다.

二. 制度의 概要

I. 設置背景

本 制度는前述한 바와 같이 政府가 中小企業의 重要性을 새삼 認識하고 中小企業에 關한 法律 및 制度 等의 支援體系와 內容을 全面 再檢討하여 1982年 中小企業振興長期計劃을樹立하는 과정에서 中小企業의 經營安定基盤을 構築하기 위한 手段의 한 方策으로써 마련된 것이다. 中小企業은一般的으로 經濟的 劣勢에 있어 去來相對方의 突發的 倒產에 對한 對應力이 微弱하므로 連鎖倒產의 危險이 높다. 이러한 連鎖倒產은 生必品, 製品 기타 サービス의 產業供給中斷 等 經濟的問題 뿐만 아니라 從業員

의 失業 等 社會的 問題로까지 擴散되는 만큼
國民經濟의 保護를 위해서도 연쇄도산을 事前
에 막아야 한다는 必要에 依해 本 制度가 設置
된 것이라 하겠다.

II. 設置 目的

本 制度는 첫째, 中小企業의 去來相對方事業者
의 倒產으로 因한 賣出債權 回收困難時 資金
을 支援하고,

둘째, 去來相對方으로부터 賣出債權의 回收遲
延時 資金을 支援하고,

셋째, 中小企業者를 為한 協同組合의 原副資
材 共同購買 및 生產製品의 共同販賣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함으로써 中小企業의 倒產을 未然
에 防止하고 아울러 經濟活動의 持續的인 安定
을 助長하여 國民經濟의 圓滑과 均衡的인 發展
을 圖謀함에 그 設置 目的이 있다 하겠다.

III. 設置經緯 및 根據法令

가. 設置經緯

1982. 4 : 中小企業振興長期計劃樹立

1982. 12 : 中小企業基金法 및 中小企業協同組
合法을 改正하여 中小企業共濟事業
基金設置에 關한 條項新設

1983. 8 : 中小企業協同組合法施行令改正으로
同基金의 運用管理에 關한 規程 補
完

1983. 12 : '84年度 政府豫算에서 30億원을 政
府出捐金으로 確定

1984. 1 : 中央會에 基金管理部 設置

1984. 3 : 同基金運用要綱制定 (經濟企劃院長
官과 財務部長官의 協議를 거쳐 商
工部長官承認)

1984. 6 : 中小企業共濟基金 加入業務開始

1985. 6 : 倒產防止貸出(第 1 號貸出) 業務開
始

1985. 9 : 同基金運用要綱改正으로 第 2 號貸
出 新設

1986. 1 : 第 2 號貸出業務 開始

나. 根據法令

○ 中小企業基本法('82. 12월 改正하여 同 制

度를 新設)

- 제20조의 2(共濟制度의 確立)

○ 中小企業協同組合法('82. 12월 改正, 5個條
項 新設)

- 第 4 章 第 3 節의 2(中小企業共濟事業基
金)

○ 中小企業協同組合法施行令('83. 8월 改正, 8
個條項 新設)

中央會는 以上과 같은 根據法令에 依據하여
同基金의 效率의이고 適正한 管理運用을 위해
細部規程인 運用要綱을 3次에 걸쳐 改正하였거
니와 앞으로도 계속 補完·改善할 豫定으로 있
다.

○ 1次改正時 主要內容('85. 9. 20)

- 第 2 號共濟金貸出의 新設

(商去來로 受取한 어음의 資金化遲延 解
消를 위한 貸出)

- 賦金月額의 上向調整

(2만원~20만원(2만원 單位로 10種)→2
만원~30만원(15種)으로 擴大)

- 共濟金貸出의 同一人 最高限度額增額
(8,400만원→12,600만원)

○ 2次改正時 主要內容('86. 7. 8)

- 第 2 號共濟貸出의 限度增額

(賦金納付殘額의 5倍→10倍)

- 第 2 號共濟貸出利率의 引下
(年 10.5%→年 10%)

- 第 2 號共濟貸出 對象어음의 擴大

(支給日이 貸出申請日 現在 60日 超過
180日 以內의 어음→30일 超過 180일 以
內의 어음)

- 共濟契約 承繼申請期間 延長

(承繼事由 發生日로부터 3個月 以內 申
請→6個月 以內 申請可能)

- 共濟金貸出申請時의 書類簡素化

○ 3次改正時 主要內容('87. 3. 6)

- 共濟契約 解止還給金 支給對象擴大

(賦金納付月數가 6月 以上인 者→3月 以
上인 者)

- 賦金納付遲延料率의 引下

(年 19%→年 10%)

IV. 制度의 特色

本 制度는 다음 5가지의 特色이 있다고 하겠다.

(1) 相互扶助精神에 立脚한 自救手段

－中小企業者의豫期치 못한 不意의 經濟的 어려움에 對處하기 위한 相互扶助로써의 自救策

(2) 保險 및 貯蓄의 兩面性

－契約解止時 賦金納付殘額에 一定率의 利子를 加算하여 支給
－賦金納付殘額의 10倍까지 貸出利用

(3) 3種의 惠澤賦與(一石三鳥의 效果)

－第1號 共濟金 貸出
－第2號 共濟金 貸出
－共同購販事業資金의 貸出

(4) 3無 原則

－無擔保, 無保證, 無利子를 原則 但, 2號共濟金貸出 및 其他의 경우例外規程 適用 있음

(5) 政府의 基金出捐

本 制度의 早期定着을 위해 政府가 年度別로 出捐하는 特別助長的 共濟制度

三. 基金造成과 運用管理

I. 基金의 造成

共濟事業의 運用管理에 必要한 財源은 '84년부터 '93년까지 10個年間 2千億원을 造成目標로 하고 있다. 그 財源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 中小企業者(共濟基金加入者)의 賦金
- 政府出捐金
- 協同組合 및 其他의 者의 出捐金
- 基金運營 収益金

政府는 每會計年度마다 豫算의 範圍內에서 政府의 出捐金을 歲出豫算에 計上토록하고 있다.

II. 基金의 運用管理

中小企業 共濟事業 目的으로 造成된 基金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제87條의 5의 規程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가 運用管理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共濟賦金의 收納 等에 關한 業務는 同規程에 依據 中小企業銀行 또는 農協中央會 等 金融機關에 委託하여 運用管理할 수 있도록 하였다.

四. 共濟基金의 主要內容

中小企業의 安定的 經營活動助長을 위해 造成된 基金은 크게 두가지 側面, 即 倒產防止를 위한 共濟金貸出과 共同購販事業資金 支援에 運用되고 있다.

I. 倒產防止共濟金貸出

가. 第1號 共濟金貸出

中小企業 共濟基金에 加入한 中小企業體가 去來相對方業體의 不渡, 廢業, 解散 等의 事由로 받을어음, 外上賣出金, 未收金, 先給金 等의 債權을 回收하기 困難할 때 共濟契約者가 共濟金貸出申請書와 함께 關聯稅金計算書, 受取한 어음 또는 手票, 事業者登錄證寫本 直前事業年度末 合計殘額試算表(稅務署長 確認筆) 및 法人登記簿謄本(法人의 境遇) 等의 書類를 具備하여 貸出要請時 貸出해 주는 것이다.

1) 貸出限度

賦金納付額의 10倍 範圍內로써 同一人 最高限度는 126百萬원임

2) 貸出條件

無擔保, 無保證, 無利子를 原則으로 함. 다만 貸出實行時 貸出金의 1/10에 該當하는 金額을 契約者の 賦金殘額에서 控除(即 權利消滅)하여 貸損準備金으로 充當한다. 따라서 控除된 賦金額만큼 더 納付해야 하며 同時에 納付期間도 그만큼 延長되게 마련이다.

3) 償還方法

6個月 拒置後 每3個月마다 貸出金의 1/10에 該當하는 金額을 10회에 걸쳐 分割償還한다.

4) 貸出의 制限

- ① 共濟基金에 加入한 後 1年이 經過되지 않은 경우

共濟事業基金 造成現況

1988. 12. 31現在 (單位: 백만원)

區 分	'84~'86		'87		'88		'89(豫想)	
	累計	當期	累計	當期	累計	當期	累計	
政府出捐金	28,000	10,000	38,000	10,000	48,000	10,000	58,000	
民間賦金	7,566	5,700	13,266	6,733	19,999	10,000	29,999	
運用收入	2,394	2,917	5,311	3,957	9,268	5,325	14,593	
小計	37,960	18,617	56,577	20,690	77,267	25,325	102,592	
解止還給金	486	776	1,262	2,267	3,529	3,000	6,529	
貸損準備金	292	425	717	411	1,128	1,400	2,528	
一般經常費	1,262	1,252	2,514	1,824	4,338	3,097	7,435	
小計	2,040	2,453	4,493	4,502	8,995	7,497	16,492	
基金造成額	35,920	16,164	52,084	16,188	68,272	17,828	86,100	

- ② 賦金納付를 6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 ③ 貸出申請時 倒産 等의 事由發生이 6개월 을 超過한 경우
- ④ 기타 運用要綱 및 共濟規程上 貸出이 甚 히 不適當한 경우
- 5) 期限利益의喪失

다음의 경우에는 貸出金을 卽時 상환하도록 되어있다.

- ① 貸出金의 分割償還을 2회 以上 지체할 때
- ② 貸出後 3회 以上 賦金納付를 지체한 때 ③ 기타 運用要綱 및 共濟規程 等에서 定한 事由에 該當한 때

6) 第1號 共濟貸出과 金融機關貸出 比較

구분	적금대출	적금담보대출	第1號 共濟金貸出
貸出限度	契約額 冕 위내	納入總額의 90% 이내	納入總額의 10倍
擔保內容	擔保提供	賦金擔保	無擔保, 無保證
貸出金利	年 11.5% 以上	左 同	無 利 子

7) 貸出現況

1988. 12. 31現在(單位: 千원)

年度	貸出		償還額	貸出殘額
	件數	金額		
'85	46	952,950	-	952,950

'86	124	1,967,700	286,669	1,681,031
'87	218	4,254,700	1,051,351	3,203,349
'88	181	4,110,400	2,424,629	1,685,771
計	569	11,285,750	3,762,649	7,523,101

나. 第2號 共濟金貸出

中小企業體가 商去來로 受取한 어음의 資金化가 遲延됨으로써 資金壓迫 等 企業의 運營이 어려울때 이를 解消하기 위한 貸出이다.

1) 貸出限度

第1號 共濟金 貸出限度와 共用이므로 第1號共濟貸出을 받은 業體의 第2號 共濟貸出限度는 그만큼 縮少된다.

2) 貸出條件

受取한 어음을 中央會에 見質擔保로 提供하여 保證人 立保(경우에 따라서는 省略)와 함께 年 10%에 該當하는 利子를 控除한 後 貸出金을 支給

3) 限度去來

第2號共濟貸出은 受取한 어음이 수반되므로 그 利用이 빈번하고 번거롭다. 따라서 이러한 煩雜을 피하기 위해 1年 單位로 限度去來를 約定(公證)하며 限度額의 決定은 申請業體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賦金納付額과 年間賣出額 等을勘案하여 制限을 받는다.

4) 具備書類

- 세금계산서 및 어음(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납세증명서
- 法人登記簿謄本(法人的 경우)
- 其他 必要한 書類

5) 債還方法

見質擔保로 提供한 어음을 中央會가 推尋依賴하여 支給期日에 自動 決濟되는 어음金額에 依해 債還된다.

6) 貸出制限事由

- 어음의 支給期日이 貸出申請日 現在 30日 以內 또는 180日 超過할 때
- 賦金納付月數가 1年 未滿일 때
- 共濟貸出金의 債還이 延滯中일 때
- 其他 運用要綱 및 共濟規程에서 定한 事由에 該當될 때

7) 第 2 號 共濟貸出과 어음割引(銀行)의 比較

區分	어 음 割 引	第 2 號 共濟貸出
對象 어 음	通常支給期日 90日 以內	支給期日이 申請日 現在 30日超過 180日 以內
利率	年 11.5% 以上	年 10%
擔保	擔保提供 또는 保證取扱	無擔保原則(但, 保證人 立保)

8) 貸出現況

① 年度別 貸出實績

(單位 : 千원)

年度	貸 出		償 還 額	貸出殘額
	件 數	金 額		
'86	497	6,772,144	3,160,242	3,611,902
'87	2,632	38,306,285	28,091,009	10,215,276
'88	5,109	73,990,553	66,582,702	7,407,851
計	8,238	119,068,982	97,833,953	21,235,029

② 地域別 貸出實績

(單位 : 百萬원)

地域 区 分	件 數		貸 出 額	
	'86~'87	'88	'86~'87	'88
서 울	1,276	2,375	17,532,652	30,241,464

釜 山	206	401	3,142,713	6,118,040
大邱·慶北	251	565	4,691,817	10,650,846
仁川·京畿	748	764	10,878,568	12,873,779
光州·全南	19	56	442,325	542,057
江 原	24	45	350,201	723,787
忠 北	20	48	332,650	1,070,678
忠 南	411	583	4,688,892	7,226,708
全 北	90	154	1,432,067	2,211,021
慶 南	57	77	1,116,332	1,724,453
濟 州	27	41	470,212	607,720
計	3,129	5,109	45,078,429	73,990,553

II. 共同購買事業資金의 支援

이는 各 協同組合이 共濟基金에 加入한 組合員을 위해 生產에 必要한 原副資材의 共同購買와 生產製品의 共同購買事業에 所要되는 資金을 貸與해 주는 것이다.

가. 組合別 資金限度配定

中央會는 基金加入率 및 基金造成率 等을 勘案한 資金配定基準에 따라 組合別 年間資金使用限度를 配定·通報하고 該當組合이 中央會에 申請함으로써 組合의 貸與를 받는다.

1) 貸出條件

○ 貸出期間은 1年 以內에서 件別融資對象事業의 1회전에 所要되는 期間

○ 貸出利子는 年 8%

○ 信用貸出을 原則으로 하되 必要時 信用保證附 또는 擔保貸出

2) 貸出制限

○ 配定된 資金을 3月 以上 經過하도록 使用치 아니할 때

○ 貸出金 債還이 延滯中일 때

○ 資金을 用途外로 流用하거나 不實運營할 때

○ 其他 資金貸出이 현저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때

3) 共同購買事業資金의 貸出節次

① 組合員이 所定樣式의 申請書 記載하여 購買 및 資金使用申請을 하면 組合은 一般

- 의으로 若干의 先受金과 함께 借入金에
該當하는 어음(償還日을 支給日字로 함)
을 徵求한다.
- ② 組合은 申請된 品目을 모아 購買處와 契約을 締結하고 中小企銀에 銀行所定樣式
의 借用申請書, 組合員別 資金受惠狀況表,
關聯購買契約書, 見質어음 等의 書類提出
과 함께 신청한다.

- ③ 企業銀行은 對象事業의 確實性 與否를 檢討한 後 組合預金 口座에 入金하고 支出
請求書에 依해 購買處로 支給한다.
- ④ 貸出金의 債還은 組合員으로부터 徵求한
어음을 推尋하여 決濟받아 終結處理하는
것이 一般的이나 資金餘裕가 있을 때에는
早期償還도 可能하다.

- 4) 共同販賣事業資金의 貸出節次
- ① 組合員이 資金使用 申請書를 提出하면 組合은 이를 취합하여 企業銀行에 具備書類
를 갖추어 신청한다.
- ② 이때 銀行은 同資金을 組合에 直接 支給
한다. 이 點이 購買處에 支給하는 경우와
다르다.
- ③ 組合은 이를 각 組合員에게 支給하며 債
還은 販賣代金 受領時 借入金을 우선返
濟하고 差額이 있으면 組合員에게 支給함
으로써 終結處理된다.
- 5) 共同購販資金支援 現況

(單位: 百萬 원)

區 分	'84	'85	'86	'87	'88
支 援 額	3,500	14,701	21,000	27,000	29,000
受 惠 組合 數	35	47	66	75	76
受 惠 組合 員 數	183	389	678	993	962

III. 其他支援內容

1) 장려금 支給

共濟契約者가 賦金月額의 42倍를 納付하고
所要期間(通常 3年 6個月) 經過 後에도 契約을
解止하지 않는 경우 賦金殘額을 基礎로 다음
算式에 依한 장려금을 每 3個月 單位로 支給한
다.

$$\text{부금잔액} \times \text{만기해지지급율}(\text{現年 } 10\%)$$

$$\times \frac{\text{支給日收}}{365}$$

2) 貯蓄性 解止還給金 支給

共濟契約者의 不得已한 事情으로 契約을 解
止하는 경우에도 賦金殘額에 運用月積數를勘
案한 利子를 加算하여 支給한다.

① 解止還給金의 支給對象

賦金納付를 3個月 以上 拂入한 者에 限하여
解止還給金을 支給한다. 그러나 協同組合의 解
散으로 因한 경우에는 賦金納付月數가 3月 未
滿인 경우에도 支給한다.

② 解止還給金의 算出方式

$$\text{부금잔액} + (\text{부금월액} \times \frac{\text{운용월 적수}}{12} \\ \times \text{지급율}(\text{現年 } 4.3\%))$$

註) 운용월적수 계산방식

$$\frac{n(n+1)}{2} - \frac{n'(n'+1)}{2}$$

n : 부금잔액에 해당하는 初月부터 中途解止時 또는
滿期時까지의 月數, 但, 공제계약해지신청이 最終
回 賦金納付日로부터 1月 以內인 경우의 最終月
과 先納賦金中 該當月의 初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月은 月數에서 除外함.

n : 賦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月數

五. 共濟基金의 利用節次

I. 共濟契約의 締結

먼저 共濟基金을 利用하기 위하여는 共濟契
約의 締結, 即 共濟基金에 加入하여야 하는 바
加入關係를 살펴본다.

1) 契約締結의 對象

共濟契約이란 基金運用管理規定이 定하는 바
에 따라 共濟賦金을 納付하고 貸出事由가 發生
할 경우 共濟金의 貸出 또는 共同購販事業資金
等의 支援받을 것을 約定하는 契約으로써 그
締結對象은 協同組合에 加入한 中小企業者에
局限하고 있다.

2) 契約締結의 制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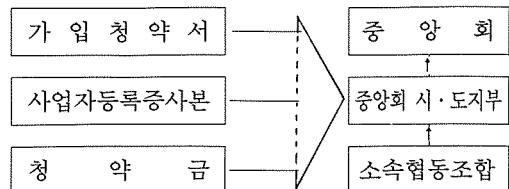
協同組合員인 中小企業者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면 共濟契約의 締結이 制限된다.

- ① 1年 以上 事業을 營爲하고 있지 아니한 者
- ② 現在 共濟契約締結한 者(二重 加入 制限)
- ③ 6個月 以上 賦金納付를 하지 않거나 또는 不正行爲로 共濟金의 貸出을 받거나 協同組合에서 脫退함으로 因하여 中央會로부터 共濟契約을 解止當한 後 6個月이 經過 되지 아니한 者
- ④ 住所 도는 主된 事業의 變更이 頻繁함으로써 去來狀況이나 經理內容 把握이 어려운 者
- ⑤ 其他 共濟事業의 參與가 오히려 事業의 適正하고 圓滑한 運營을 沮害할 憂慮가 있는 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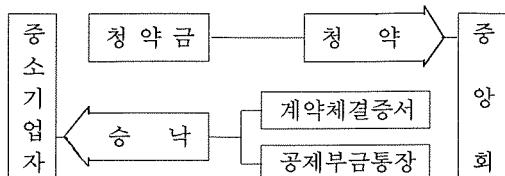
3) 共濟契約節次

共濟契約을 締結하려면 所定樣式의 加入請約書 作成하여 中央會, 中央會 各市·道支部 또는 所屬協同組合에 提出하는 同時に 請約金(1回 賦金으로 對替)도 納付하여야 한다.

*기금가입 청약절차



*공제계약의 성립



4) 賦金月額의 變更

契約締結後 基金加入者の 形便에 따라 所定의 節次를 거쳐 賦金月額을 增·減할 수 있다.

II. 共濟賦金의 納付

1) 月賦金의 納付期限 및 場所

地 域 別 加 入 者 分 布 現 況

(單位 : 個)

地域別 區分	'84~'87			'88			累計		
	加入	解止	計	加入	解止	計	加入	解止	計
서울	1,390	246	1,144	576	155	421	1,966	401	1,565
釜山	554	125	429	143	68	75	697	193	504
大邱·慶北	1,062	209	853	271	130	141	1,333	339	994
仁川·京畿	809	177	632	126	85	41	935	262	673
光州·全南	350	120	230	73	68	5	423	188	235
江原	158	71	87	64	39	25	374	125	249
忠北	133	67	66	25	13	12	183	84	99
忠南	310	86	224	27	14	13	160	81	79
全北	260	67	193	54	37	17	314	104	210
慶南	316	97	219	48	37	11	364	134	230
濟州	36	18	18	24	2	22	60	20	40
計	5,378	1,283	4,095	1,431	648	783	6,809	1,931	4,878

共濟賦金은 每月 末日까지 中央會의 収納事務가 委託된 中小企業銀行 또는 農協中央會의 營業店에 納付한다.

2) 賦金의 納付滿期 및 停止

共濟賦金은 金融機關의 積金과는 달리 定해진 滿期가 없고 다만, 賦金을 納付함으로써 다음의 金額 또는 基準에 達하면 賦金의 納付를停止하게 된다.

○ 賦金殘額이 賦金月額의 42倍에 達할 때

○ 賦金殘額이 1,260萬원에 達할 때

註) 賦金月額의 增額 또는 減額이 있을 경우에는 變更된 賦金月額의 42倍에 達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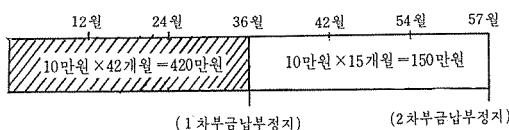
3) 賦金納付의 再開 및 延長

－共濟契約者가 賦金納付停止後 第1號控除貸出을 받은 경우는 貸出金의 1/10에 該當하는 金額만큼 賦金의 納付를 再開한다.

－共濟契約者가 賦金納付停止되기 前에 第1號共濟貸出을 받은 경우는 貸出金의 1/10에 該當되는 金額만큼 賦金의 納付가 延長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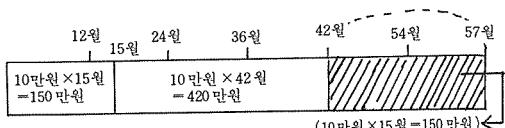
《例示 1》

월부금 10만원, 부금납부 정지후 第1號 共濟貸出을 받은 경우(貸出金 : 1,500만원)



《例示 2》

《例示 1》의 경우와 같고 다만 賦金納付停止前인 中途에서 第1號共濟貸出(1,500萬원)을 받은 경우



위의 圖示에서와 같이 15回 納付時點에서 1,500만원의 1호공제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의 1/10인 150만원(15회分)의 賦金納付가 延長된다.

4) 賦金의 先納

賦金을 納付하여야 할 月의 前月末日 以前에 納付한 때에는 先納割引料를 支給한다.

先納割引料 : $(부금월액 \times \frac{5}{1,000}) \times \text{先納月數}$

註: ① 1月 未滿의 端數가 있을 경우 14日 以下은 切捨, 15日 以上은 1月로 計算함.

② 先納割引料는 解止還給金 또는 貸出金支給時에 加算支給함.

5) 納付遲延料 賦課

賦金 納付期限까지 納付치 못한 경우에는 지우에는 지연료 $(\text{월부금} \times \text{지연료율} \times \frac{\text{지체일수}}{365})$ 를 賦課한다.

지연료의 부과는 共濟貸出金, 解止還給金 또는 장려금支給時 相計處理한다.

다만 지연료율은 基金運用要綱 改正에 따라 '87. 3. 6 以前 加入分은 年 19%, 그 以後 加入分은 年 10%를 適用한다.

III. 共濟契約의 承繼

1) 承繼事由

共濟契約者에게 相續이나 合併 도는 그 事業의 全部 讓渡가 있는 경우에는 그 包括承繼人 또는 그 事業一切의 讓受人은 中央會에 所定의 節次를 거쳐 共濟契約者の 地位를 承繼할 수 있다.

2) 缺格事由

包括承繼人 또는 事業의 全部 讓受人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該當되면 共濟契約의 承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① 共濟契約을 承繼하고자 하는 者가 協同組合員인 中小企業者가 아닐 때
- ② 共濟契約을 承繼하고자 하는 者가 基金加入對象者가 아닐 때
- ③ 共濟貸出金 等의 償還義務를 引受하지 않으려 하는 때 等

3) 承繼節次

共濟契約을 承繼하고자 하는 者는 所定樣式의 承繼申請書에 承繼事由를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 갖추어 中央會에 申請하여 承諾을 받는다.

同申請은 承繼事由發生日로부터 6月 以內에 하지 않으면 失效가 된다.

註) 共濟契約者인 個人事業主가 法人으로 轉換한 경우에는 設立된 法人이 個人事業主事業의 全部를 讓渡받은 경우에 限하여 承繼가 認定된다.

IV. 共濟契約의 解止

共濟契約의 解止는 3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1) 任意解止

共濟契約者가 任意로 解止하는 경우

2) 當然解止

中央會가 다음 事由에 該當할 때 職權으로 解止하는 경우

- ① 共濟契約者가 계속하여 6月 以上 賦金의 納付를 지체한 때
- ② 共濟契約者가 虛爲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共濟金의 貸出 또는 解止還給金의 支給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 할 때
- ③ 共濟契約者가 所屬協同組合에서 脫退하여 協同組合員이 아닌 者로 된 때

3) 摶制解止

共濟契約者가 死亡하거나 法人の 解散, 廢業 또는 그 事業의 全部를 讓渡한 경우 그 承繼가 없는 때의 共濟契約은 解止된 것으로 看做한다.

六. 結語

以上에서 살핀 바와 같이 共濟基金은 政府의 出捐과 中小企業者の 參與(基金加入)로 造成되고 이렇게 造成된 基金을 中央會가 運用管理하고 있다.

中央會가 共濟基金을 運用管理한지도 별써 5年째 접어들고 있는 現時點에서 共濟基金이 活

發히 利用되고 同基金의 必要性과 重要性이 中小企業者間에 널리 認識되고 있어 同基金이 어느 程度 制度的 裝置로써 定着되어 가고 있음을 볼때 實務者の 한 사람으로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公제기금加入者數가 加入可能한 中小企業者에 比해 輒씬 未洽하고 또한 同基金의 造成內譯도 政府出捐金이 民間賦金에 依한 造成額보다 壓倒的으로 땊은 點을 勘案할 때 加入對象을 全中小企業者(非組合員)에 擴大·開放하고 새로운 受惠商品의 開發과 共濟基金에 關한 弘報도 多樣하게 加一層 強化하는 等의 努力이 要求된다.

더우기 共濟基金에 加入하고서도 賦金納付를 怠慢히 하여 必要한 適期에 共濟貸出을 利用치 못하거나 또는 利用方法을 몰라서 放置하는 加入業體를 接할때 마다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禁 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共濟貸出을 有效適切히 活用함으로써 企業資金壓迫에서 解消되어 倒產危機를 벗어나는 業體도 적지 않음을 대할 때는 일하는 보람과 爵持를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共濟基金이 制度的으로 定着하기 위하여는 加入對象을 全中小企業에 門戶開放하는 關聯法의 改正이 時急하다 하겠다. 그리하여 中小企業共濟基金은 中小企業에 依해, 中小企業을 위한 中小企業의 共濟基金이 되도록 中小企業의 보다 깊은 關心과 積極的인 參與가 있을 때 共濟基金의 前途는 遼遠의 불길처럼 全中小企業界도 擴散되고 定着될 것으로 믿어진다.